

제주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가단8571(본소), 2017가단52353(반소) 판결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내부분담금청구등 · 구상금]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나11513, 2017나11520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가단8571, 2017가단5235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강한건설

피고(반소원고)제주특별자치도

변론 종결 2017. 4. 21.

판결 선고 2017. 6.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40,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69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주지방법원 2015나5637호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고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미지급된 25,652,787원에 관하여 17,956,95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에 대한 변제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5,652,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30. 피고와 피고가 발주한 어승생저수지 제2소수력발전 시설공사(토목) 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기간: 2012. 4. 4.부터 2012. 9. 3.까지, 공사대금 264,844,000원). 위 공사계약은 피고가 시행하던 수력발전시설 공사의 일부였는데, 전체 공사는 한라산 Y계곡에서 어승생 제2저수지까지 관로를 매설하여 저수지물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였다. 원고는 위 전체 공사 중 착수정을 만들기 위한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담당하였다.

나. A이 2012. 6. 10. 10:30경 B Y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1100도로의 어리목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다가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 9미터 아래의 구덩이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탑승자인 C은 응급치료 중

사망하였고, D, E, A은 상해를 입었다.

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주식회사 하이오토렌탈과 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삼성화재는 2012. 11. 14.까지 망 C의 유족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5,519,400원을 지급하고, 2013. 8. 26. D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91,410,320원을 지급하였다. 삼성화재는 위와 같이 지급한 합계 326,929,720원(135,519,400원 + 191,410,320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3804호로 제기하였다.

라. 구상금 소송을 담당한 위 법원은 비록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브레이크 조작과정에서의 문제나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도로에 접하여 9미터 깊이의 구덩이가 생기고 그 도로의 폭과 형상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 대한 고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도로와 구덩이 사이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되, 사고 경위 등을 감안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 비율을 합계 40%로 인정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5. 6. 19.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삼성화재에 130,771,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 후인 2015. 8. 19. 삼성화재에 72,426,129원을 지급하였다.

마.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2015나5637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오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장소가 비록 경사진 도로이기는 하나, 사고 당시 기상상태가 양호하고, 전방에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인 점, 운전자인 A은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서있는 드럼통이나 발전시설에 부딪치려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수사결과 브레이크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과실을 40%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높고, 30%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원고와 피고에게 삼성화재가 C의 유족과 D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합계 326,929,720원의 30%인 98,078,916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위 금원 중 72,426,129원은 원고가 2015. 8. 19. 삼성화재에 기지급한 72,426,129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25,652,787원은 2016. 5. 3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바. 피고는 2016. 5. 31. 25,652,780원을 삼성화재에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청구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지정한 위치에서 시공하였던 점, 사고 현장 도로는 낭떠러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형으로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인근 도로 양 옆으로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인 점, 원고는 안전시설을 모두 구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내부적으로 70%의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삼성화재에 지급한 72,426,129원의 70%인 50,698,29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삼성화재에 미지급된 25,652,787원의 70%인 17,956,950원의 지급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나. 반소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감독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정도까지 감독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삼성화재에 변제한 25,652,7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청구 중 확인청구 부분

원고의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98,078,916원 중 70%는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면 될 것이므로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또한 피고는 이미 삼성화재에 25,652,78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고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는 전체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구상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구상의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부담 비율만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위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인 A의 과실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사고방지시설을 좀 더 철저히 설치하였다면 차량의 이탈 및 추락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방지시설은 원고에게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우측으로 이탈하여 구덩이로 떨어진 사건인데 도로의 형상 및 지형 자체의 특수성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공사 장소의 지정은 피고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위와 같이 특수한 지형에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라는 점은 피고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좀 더 사고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은 운전자 A 70%, 원고 20%, 피고 10%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삼성화재가 C의 유족과 D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합계 326,929,720원 중 원고의 부담부분은 65,385,944원(326,929,720원 × 20%)이고, 피고의 부담부분은 32,692,972원(326,929,720원

× 10%)이다. 그런데 원고가 삼성화재에 72,426,12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40,185원(72,426,129원 - 65,385,9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일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삼성화재에 지급한 돈은 피고의 부담부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확인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윤현규